파주시 공공용통행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용 통행로 중 법적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사유지에 위치한 현황도로 등은 노면 파손, 포트홀, 배수불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공공용 통행로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용통행로 유지관리사업의 시행 사유 및 예산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사업 시행 시 주민 안전 우선, 최소 범위 시행, 토지이용 상태의 실질적 변경 금지 등 시행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사업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사업 시행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를 정함(안 제6조)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주민 안전 확보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간 조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대상 선정, 공사범위, 시행절차,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건축법」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6. 1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예정)

파주시 공공용통행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용통행로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용통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행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
2.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공공의 통행기능을 수행하는 현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지관리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통행로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

제3조(유지관리사업)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용통행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용통행로의 유지관리사업(이하 “유지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노면의 파손으로 통행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주민의 생활 통행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한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사업의 시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면 재포장

2. 포트홀 보수

3. 빗물받이 정비

4. 안전시설의 보수

5.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③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소유관계,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가 공용으로 제공된 경위, 기존 이용상태 및 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행의 원칙) ①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을 할 때 주민의 안전 확보와 기존 공공용 통행 기능의 유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도로의 폭, 노선, 종단 및 횡단 구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이용 상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의 위치, 배수체계 또는 토지의 점유범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공사의 내용과 방법

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 조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현장조사 및 관계 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통행로의 위치·면적·경계 및 소유·관리 관계
2.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위, 이용 기간 및 이용 범위
3. 노면과 기존 시설의 상태, 안전사고의 위험 및 우회로 유무
4. 필요한 공사의 내용과 범위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한다.

1. 일반 공중의 이용 정도
2. 주민의 생활 통행 필요성
3. 공공성
4. 노면의 파손 정도
5. 안전사고 발생 우려
6. 유지관리의 시급성
7.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적 근거 및 허용 범위
8. 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 및 예상되는 재정 부담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게 유지관리사업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연락처를 확

인한 경위, 연락을 시도한 내용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지의 위치, 사업내용, 시행 예정 시기 및 의견제출 기간·방법 등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긴급한 재난·재해의 복구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유지관리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생략한 사유를 기록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매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용통행로의 공공성, 통행 필요성, 시급성 또는 안전위험 등이 현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매수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산권의 보호) ①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을 할 때 주민의 안전 확보

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존 공공용 통행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사업은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점유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 기준) 시장은 유지관리사업의 대상지 선정, 현장 조사, 공사 범위, 의견청취 및 공고, 시행 절차, 안전관리, 기록·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관리과 ☎ 940-4841
입안자	도로관리과장	배 준 우
	도로관리3팀장	박 연 진
	담 당 자	김 광 률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